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운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216

발의연월일: 2022. 6. 30.

발 의 자:정운천·성일종·이채익

이종성 · 김승수 · 정우택

지성호 · 김미애 · 김학용

최춘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난 20년간 농가인구가 349만명 감소('92년 570만명→'21년 221만명)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영 농상속 공제의 경우 20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에 비 해 현저히 낮음.

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 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, 젊은 영 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(안 제18조제2항제2호). 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2호 중 "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)"을 "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5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억 원
- 나.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70억 원
- 다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100억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영농상속 기초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8조(기초공제) ① (생 략) | 제18조(기초공제) ① (현행과 같 |
| | <u></u> |
|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| ② |
|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| |
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 |
|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| |
|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| |
| 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 | ,, |
|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| |
|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| |
| 용하지 아니한다.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| 2 |
|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| |
|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상속: | |
| 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 |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|
| 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| 금액을 한도로 하는 영농상속 |
| 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) |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|
| <u><신 설></u> | 가.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 |
| |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|
| | 바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 |
| | 사하거나 5년 미만 계속하 |
| | 여 경영한 경우: 50억원 |

| <u><신 설></u> | <u>나.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</u>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|
| | <u>경우: 70억원</u> |
| <u> <신 설></u> | 다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 |
| | 속하여 경영한 경우: 100억 |
| | <u>원</u> |
| ③ ~ ⑪ (생 략) | ③ ~ ⑪ (현행과 같음) |